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리지침 적용범위,
부정 사례에 대한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리지침 제40조(제재 등) ②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지급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별표]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정부지원금 환수 범위

5)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 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전액
나) 사업비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전액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외부 압력, 부정청탁, 제3자 부당개입 ¹⁾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의 도입기업 또는 <u>공급기업</u> 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나)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과제의 도입기업 또는 <u>공급기업</u> 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다) 도입기업 또는 <u>공급기업</u> 이 담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전액
라) 보고서(착수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협약서 이외 제3자와 이면계약(이행각서) 등을 체결한 경우	3년	전액
마) 협약 당시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 이후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착오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전액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